

제 호

청소년정책 분석·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서

명 칭 : 청소년정책 분석·평가 전문지원기관

기 관 명 :

대 표 자 :

소 재 지 :

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청소년정책 분석·평가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성평등가족부장관

직인